

농 촌 진 흥 청

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제조 · 수입업자가 특정판매업자에게 특별관리대상농약 공급시 유의사항 안내

- 1. 귀 회사(협회)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- 2. 우리청에서는 공급대상자가 정해진 농약을 제조.수입업자가 판매업자를 통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농약관리법 시행령 개정(2024.4.25.)에 따라 이와 관련된 농약등 및 원제의 취급제한기준 고시를 2025.1.16. 개정·시행하였습니다.
- 3. 이에 따라 제조·수입업자가 공급대상자가 정해진 농약을 특정판매업자에게 공급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, 특정판매업자를 지정한 경우 그 지정결과 등을 농촌진흥청(농자재산업과), 농림축산검역본부(식물방제과),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(농업정보자재과), 판매업을 등록한 해당 지자체 담당부서에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.

- 아 래 -

- 가. 특별관리대상농약을 특정판매업자에게 공급시 주의사항 안내
 - 공급하려는 검역용 훈증제 특성에 맞는 주의사항, 물질안전보건자료(MSDS) 등
 - 농약 등 및 원제의 취급제한기준 고시 제9조제2항에 따른 해당 농약의 수송, 보관, 판매시 주의사항
- 나. 특정판매업자 지정 및 변경 등(해당사실 발생 후 10일 이내 제출)
 - 최초 지정하거나 지정된 내용이 변경된 경우(지정 취소 포함) 제출 내용
 - 판매업자 상호명 및 대표자 성명
 - 판매업자 사업장 및 보관창고 소재지
 - 판매하려는 특별관리대상 농약의 품목명 및 상표명
 - 제출기관: <u>농촌진흥청(농자재산업과)</u>, <u>농림축산검역본부(식물방제과)</u>, <u>국립농산물</u> <u>품질관리원(농업정보자재과)</u>, <u>판매업을 등록한 해당 지자체 담당부서</u>

붙임 농약등 및 원제의 취급제한기준 고시 개정사항 1부. 끝.



수신자 한국작물보호협회, (주)농협케미컬 대표이사 귀하, 한국마간(주) 대표이사 귀하, (주)아트라텍 대표이 사 귀하, 린데코리아(주) 대표이사 귀하, (주)팜한농 대표이사 귀하, (주)세이프퓸 대표이사 귀하, (주)에코플랜츠 대표이사 귀하, 북부산업가스 대표이사 귀하, (주)유피엘리미티드코리아 대표이사 귀 하, (주)제일가스 대표이사 귀하

전결 2025. 2. 3. 농자재산업과장 **박상원** 주무관 농업사무관 이승윤 소재성

협조자 농업사무관 김영림

시행 농자재산업과-920 (2025. 2. 3.) 접수

우 54875 국 농자재산업과 (중동)

전화번호 063-238-0825 팩스번호 063-238-1773 / addung1004@korea.kr / 대국민 공개

농업은 스마트하게, 농촌은 매력있게